

시 민

문서번호	인사과-30589
결재일자	2014. 12. 4.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84호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노혜정	한영희	김영환	김의승	12/04 정호성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통합연금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2014. 12.

행 정 국
(인 사 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음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무 ■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빗물순환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바른 우리말 <input type="checkbox"/> 인권 <input type="checkbox"/> 무 ■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관 계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시 산 하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언 론 홍 보 계 획	보도자료 <input type="checkbox"/> 기자설명회 <input type="checkbox"/> 현장설명회 <input type="checkbox"/> 기획보도 <input type="checkbox"/> ● 홍 보 계 획 : 기고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없음 ■

통합연금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연금부담금 증액고지(연금관리공단) 및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급 지급으로 인해 '14년도 인력운영비(통합연금부담금)이 부족분이 발생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예비비 사용 필요성

- 퇴직자수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부담금 증액,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판결(1심)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가지급) 기관부담금 등 예측하지 못한 수요로 인하여 예산외 지출이 필요한 사안으로

※ 퇴직자수 증가 현황 : 2014.11.30.현재 667명, 2013년 421명으로 246명 증가

-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5,324백만원)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불용액이 예측되는 사업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 납부기한(12월 10일) 내 미집행시, 가산금(3%) 부과로 인한 초과 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 함.

□ 초과 지출 발생 사유

- 연금부담금 :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제69조의3, 제69조의4
 - 고지금액 증가사유 :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금액 증가 및 매 분기마다 실비정산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은 퇴직자수 증가로 인해 증액됨
 -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14.11.30)잔	4분기 고지액	부족액	비고	
		계	1분기	2분기					3분기
합 계	165,055,793	138,778,556	58,714,144	19,562,706	60,501,706	26,277,237	29,506,170	△3,228,933	
일 반 회 계	135,554,162	113,966,188	48,209,878	16,062,836	49,693,474	21,587,974	24,428,158	△2,840,184	예비비사용
특 별 회 계	9,415,580	7,927,512	3,360,656	1,119,722	3,447,134	1,488,068	1,488,068		
상수도특별회계	20,086,051	16,884,856	7,143,610	2,380,148	7,361,098	3,201,195	3,589,944	△388,749	자체전용

○ 국민건강보험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 고지금액 증가사유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판결(1심)에 따라 가지급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부과

-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14.11.30)잔	납부액	부족액
일반회계	27,323,776	22,690,721	4,633,055	7,117,034	△2,483,979

※ 기타 상세 사유는 별첨 검토보고 참조

예비비 사용계획(안)

○ 사용금액 : 5,324,163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비비지출 요구액	예비비사용 승인 후 집행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일반회계)	130,951,155	22,469,707	108,481,448	△5,324,163	103,157,285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162,877,938	136,656,909	26,221,029	5,324,163	31,545,192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 후 소요액③	예비비 지출요구액 ③-①-②
합 계		162,877,938	136,656,909	26,221,029	31,545,192	5,324,163
인력운영비 (통합연금 부담금)	연금부담금 (304-01)	135,554,162	113,966,188	21,587,974	24,428,158	2,840,184
	국민건강보험금 (304-02)	27,323,776	22,690,721	4,633,055	7,117,034	2,483,979

추진일정

-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행정국) : '14.12. 3.
- 예비비 승인 및 편성(기획조정실) : '14.12. 5.
-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납부(행정국) : '14.12.10.

- 붙 임 : 1. 예비비 지출요구서
2. 연금부담금 부족분 검토보고
3.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검토보고.끝.

붙임 : 예비비 지출요구서

예비비 지출요구서

○ 예비비 사용 예산과목

- 조직 : 행정국(인사과)
- 정책 및 단위사업 :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인력운영비
- 세부사업 : 인력운영비(통합연금부담금)

(단위 : 백만원)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 후 소요액③	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	비 고
합	계	162,877,938	136,656,909	26,491,029	31,545,192	5,324,163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 담금)	연금부담금 (304-01)	135,554,162	113,966,188	21,857,974	24,428,158	2,840,184	
	국민건강 보험금 (304-02)	27,323,776	22,690,721	4,633,055	7,117,034	2,483,979	

○ 예비비 지출사유

-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증가 및 매 분기마다 실비정산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은 퇴직자수 증가로 인해 증액되어 납부액에 비해 당초 편성된 통합연금부담금이 부족하고,
※ 퇴직자수 증가 현황: 2014.11.30. 현재 667명, 2013년 421명으로 246명 증가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판결(1심)에 따라 가지급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을 납부해야 함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함.

2014년 12월

행정국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2014년 4분기 연금부담금 납부관련 검토보고

2014년 4분기 연금부담금 고지에 따른 당초 편성예산액이 부족하여 연금 부담금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2014년 연금부담금 주요현황

○ 2014년 연금부담금 납부금액 증액 사유

- '14년 편성예산 165,055,793,000원이나 최종확정납부액은 168,284,725,820원으로 부족분 3,228,932,820원이 발생함.
-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금 : 예산 편성 후 '14년 보수예산 확정으로 인한 증액분 및 '13년 결산에 따른 추가금액 고지분
 - ※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보수예산×11.557%, 재해보상부담금은 보수예산×0.124%
- 퇴직수당부담금 : 매 분기마다 실비정산하고 퇴직자수('14년 667명) 증가로 인해 증액됨. (단위 : 원)

구분	편성예산 (A)	공무원연금공단 최종확정납부액(B)			증감 (B-A)
		계	2014년	'13년 결산	
소계	165,055,793,000	168,284,725,820	166,999,896,280	1,284,829,540	3,228,932,820
연금부담금·보전금	123,820,412,000	124,019,270,770	123,827,080,000	192,190,770	198,858,770
퇴직수당부담금	39,906,605,000	42,934,216,930	41,844,222,280	1,089,994,650	3,027,611,930
재해보상부담금	1,328,776,000	1,331,238,120	1,328,594,000	2,644,120	2,462,120

※ 회계별 예산편성현황

(단위 : 원)

구분	합계	일반회계(행정국 인사과)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금액	165,055,793,000	135,554,162,000	9,415,580,000	20,086,051,000

행정사항

- 연금부담금 납부부족액을 일반회계 부담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조치
 - 부족액 △3,228,933천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담분 2,840,184천원 예비비로 지출
 - 상수도 특별회계 부담분 388,749천원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예산 전용 지출

별첨 2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소송 관련 건강보험부담금 검토보고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 판결(1심)에 따라 가지급된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추진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추가지급금 내역 송부('14.11.17.국민건강보험공단)
- 소송결과 : 1심판결에 따른 가 지급
 - 1심판결('11.11.17.) : 실 근무한 시간외근무 모두 수당지급
 - 2심판결('14. 1.10.) :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병급제한 규정은 유효

가지급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요양포함 포함)

- 건강보험공단 청구액 : 4,977명 5,496백만원
 - 기관부담금 2,748백만원, 근로자부담금 2,748백만원

(단위 : 백만원)

년도	청구총액	건강보험료율(요양보험)	개인부담금	기관부담금
계			2,748	2,748
2006	160	4.48%(-)	80	80
2007	1,704	4.77%(-)	852	852
2008	1,788	5.08%(4.05%)	894	894
2009	1,650	5.08%(4.78%)	825	825
2010	194	5.33%(6.55%)	97	97

※ 요양보험납부는 2008년부터 산정함

행정사항

- 납부기한 : 2014년 12월 10일까지
- 소요예산 : 2,748백만원(기관부담금)
 - 예산담당관 : 예비비 사용검토·승인
 - 예산과목 :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등, 국민건강보험금
 - 미납시 가산금 3% 발생(월 1%, 최고 9%), 채권 압류 등